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1.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란?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2)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2.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수칙 10계명

0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02.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 통로 확보
03.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
04. 전기작업시 접지를 하고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05. 기계·설비 정비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정비안내 표지판을 부착
06.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경고 표지 부착
07.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방호장치 설치
08.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설치
09. 금속의 용접·용단 등의 작업시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격리
10.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전·작업 중 산소농도·유해가스 등을 측정하고 환기 실시

4.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안전보건기준을 지키고 예방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6조)

1)안전·보건교육 이수 (제31조,31조의2, 제41조)

근로자는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작업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작업에 근로자 배치시,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

※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2

2)건강진단 이행(제43조3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에서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함

3)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48조)

위험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
-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4)지급하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함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